

---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  
소상공인 모집 주의사항

---

2024.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목 차

1. 사업신청 자격 .....	1
2. 소상공인 기준 및 확인방법 .....	4
3. 경영개선 지원 제외 업종 .....	18
4. 기타 주의사항 .....	19
5. 지역별 주관기관 세부 안내사항 .....	20

# 1

## 사업신청 자격

□ 신청자격 : '23.1.1. 이전 개업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경영위기 지역 소재 소상공인

\* 세부 지원조건별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함

□ 경영위기 소상공인('23.1.1. 이전 개업한 자에 한함)

① (매출액) 전년대비 10% 감소 소상공인

<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

구분	개업시기*	감소 판단 기준	매출액 감소 확인
전년대비 10% 감소	~'22.12.31	'22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3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 분기별 국세청 신고매출액은 월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단위) 환산 적용  
(예 : '22년 7월 개업 사업체(6개월 영업) → '22년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매출액의 2배)

② (저신용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744점 이하 소상공인

③ (기 타) 코로나 이후 경영위기 소상공인

( '17~'19년 평균 대비 '23년 매출액 20% 이상 감소)

< 코로나 경영위기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

개업시기	감소 판단 기준	매출액 감소 확인
~'16.12.31	'17~'19년 국세청 신고매출액(평균)	'23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17.1.1~'17.12.31	'17~'19년 국세청 신고매출액(평균) * '17년 발생매출액은 12개월 환산 적용	
'18.1.1~'18.12.31	'18~'19년 국세청 신고매출액(평균) * '18년 발생매출액은 12개월 환산 적용	
'19.1.1~'19.12.31	'19년 국세청 신고매출액(평균, 12개월 환산)	

□ 경영위기지역 소상공인

\*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 내에 해당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해당지역에서 영업중인 경우

①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지정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20.2.27.~'25.2.26.	동해북평 국가산업단지(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동해북평 일반산업단지(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일원(110필지)) 정읍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일원(81필지)) 나주 일반산업단지(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운곡동 일원) 나주 혁신산업단지(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동수동 일원) 장흥바이오 식품산업단지(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일원)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 명산리 일원)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학교면 마산리 일원(84필지)) 광양만세풍 일반산업단지(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37-1번지 일원(32필지))
'23.1.26.~'25.1.25.	금사 공업지역(부산광역시 금사동 7-1번지 일원(금사동)) 포항 철강1단지(포항시 남구 장흥동, 송내동, 괴동동, 동촌동, 호동 일원) 포항 철강2단지(포항시 남구 장흥동, 호동 일원) 포항 철강3단지(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도리, 옥명리, 대각리 일원) 포항4 일반산업단지(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옥명리, 대각리 일원)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23.3.21.~'25.3.20.	담양 일반산업단지(전남담양군 담양읍, 금성면)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전남 영광군 대마면)
'23.11.21.~'25.11.20.	하남 일반산단(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일원) 진곡 일반산단(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동 일원) 평동1,2차 일반산단(광주광역시 광산구 옥동 일원) 평동3차 일반산단(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일원)

②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고용위기지역
'23.1.1.~'24.6.30.	경상남도 거제시

③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22.10.31.~'24.10.30.	경북 포항시

#### 4 특별재난지역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자 이전부터 해당지역에서 영업하여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해당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영업중인 경우

구분	선포연도	특별재난지역
자연 재난	'21.7.22(호우)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21.9.6(오마이스)	경북 포항시
	'22.8.22(폭우)	(시·군·구) 1차: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읍·면·동) 1차 : 서울 강남구 개포1동, 경기도 여주시(금사면·산북면)
	'22.9.1(폭우)	(시·군·구)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전체), 강원 홍천군 (읍·면·동) 경기 의왕시 고천동·청계동/용인시 동천동, 충남 보령시 청라면
	'22.9.7(힌남노)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22.9.28(힌남노)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23.1.11(폭설)	전북 순창군 쌍치면
	'23.7.19(폭우)	(시·군·구)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읍·면·동) 전북 김제시 죽산면
	'23.8.14(폭우)	(시·군·구)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 (읍·면·동) 충북 보은군 회인면/증평군 증평읍·도안면/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상주시 동문동
	'23.8.14(태풍카눈)	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
	'23.8.14(냉해)	(시·군·구) 경북 의성군·청송군 (읍·면·동)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 예안면·북후면/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문경시 문경읍·산 북면/봉화군 춘양면·물야면/상주시 모동면
	'23.8.29(태풍카눈)	강원 고성군(전체), 경북 경주시 산내면/칠곡군 가산면
사회 재난	'22.3.6(산불)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22.3.8(산불)	강원도 강릉시·동해시
	'22.10.30(이태원)	서울 용산구
	'23.4.5(산불)	경북 영주시,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 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23.4.12(산불)	강원 강릉시

## 2

## 소상공인 기준 및 확인방법

### ①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sup>①</sup> 중 소상공인<sup>②</sup>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sup>③</sup>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②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③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②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대출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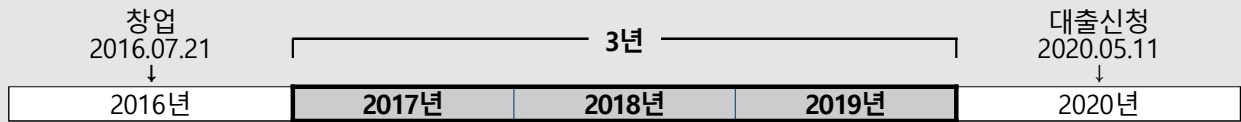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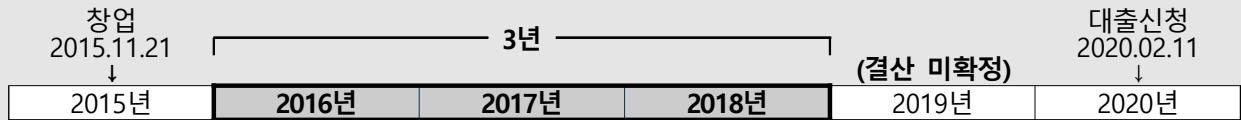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예시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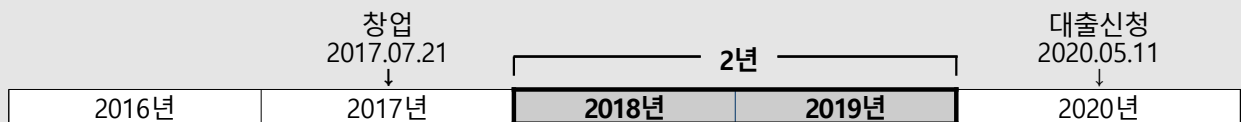


☞ 평균매출액등 : (2017년~2019년 매출액 합계)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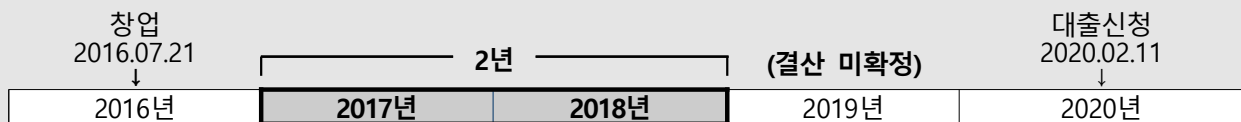


☞ 평균매출액등 : (2016년~2018년 매출액 합계) / 3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 평균매출액등 : (2018년~2019년 매출액 합계) / 2



☞ 평균매출액등 : (2017년~2018년 매출액 합계) / 2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



☞ 평균매출액등 : '19.05.16~'19.12.31 매출액(A) 연환산 ( = (A/230일) × 365일 )



☞ 평균매출액등 : ① + ②

① '19.08.16~'19.12.31 매출액(A) 반기환산 ( = (A/138일) × 184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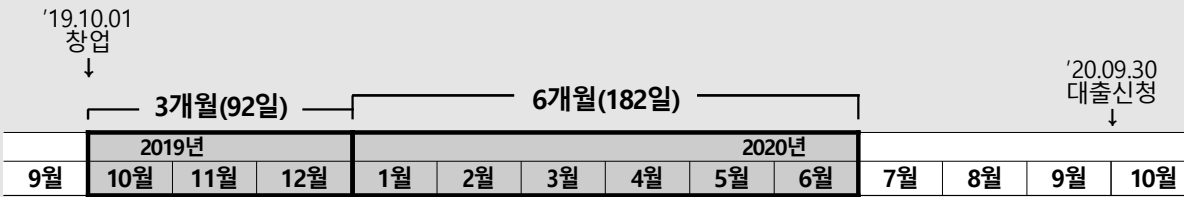
② '20.01.01~'20.06.30 매출액(B) 반기환산 ( = B )

<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



☞ 평균매출액등

: '19.07.01~'19.12.31 매출액(A) 연환산 ( = ( A × 2 ) or { (A/184일) × 365일 } )



☞ 평균매출액등 : ① + ②

① '19.10.01~'19.12.31 매출액(A) 반기환산 ( = ( A × 2 ) or { (A/92일) × 184일 } )

② '20.01.01~'20.06.30 매출액(B) 반기환산 ( = B )

<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



☞ 평균매출액등 : ( (2020년 6월 2일 ~ 2020년 6월 10일 매출액 합계) / 9일 ) \* 365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사례

**2016년 창업한** A기업은 음료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2017년~2019년** 3년간 평균매출액은 110억원(음료제조업 분야에서 70억원, 도매업 분야에서 40억원)임. **2020년 6월에 대출을 신청한 A기업의** 소기업 해당 여부는?

**1 주된 업종 판단**

70억원(음료제조업)과 40억원(도매업)을 비교하여,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주된 업종에 해당함

⇒ 음료제조업이 주된 업종

**2 매출액 기준 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라, A기업의 소기업 여부 판단에 적용할 업종은 '음료제조업'임을 확인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3 규모기준 충족여부 확인**

3년 평균매출액 110억원과 업종별 기준인 120억원을 비교

⇒ 규모기준을 충족

**4 소기업 적용기간 확인**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2019.12.31.)에서 3개월이 경과한 '20년 4월 1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에 해당

⇒ 적용기간 충족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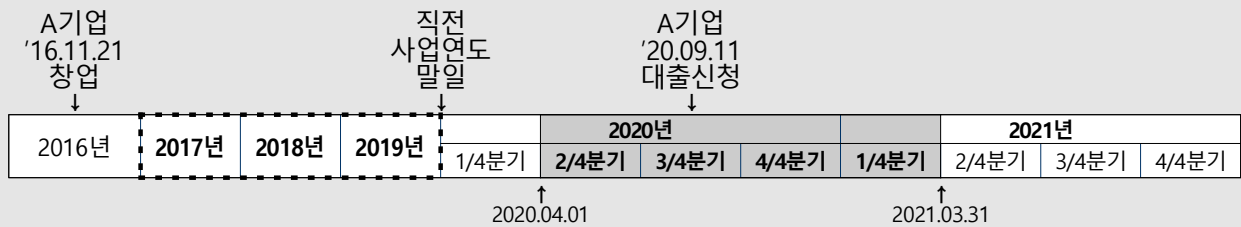
○ (소기업 해당여부 적용기간)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②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한 경우	
③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경우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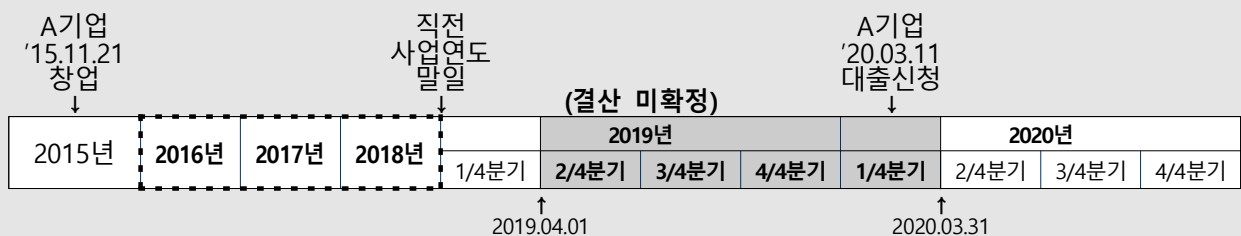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소기업 여부 적용기간 예시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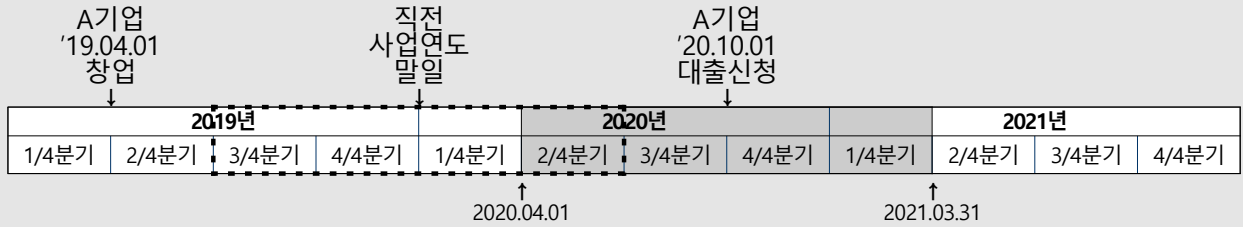


☞ A기업 2020년 09월 11일 대출신청 → A기업의 **3개년도(2017년~2019년)의 평균매출액등**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0년 04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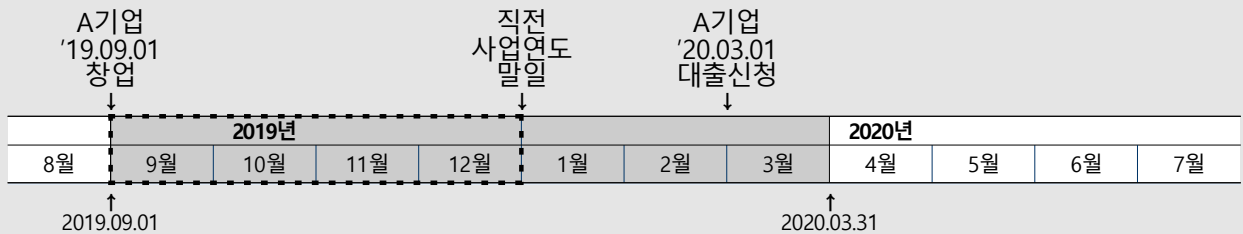


☞ A기업 2020년 03월 11일 대출신청 → (2019년 결산 미확정) → **3개년도(2016년~2018년)의 평균매출액등**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19년 04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 ②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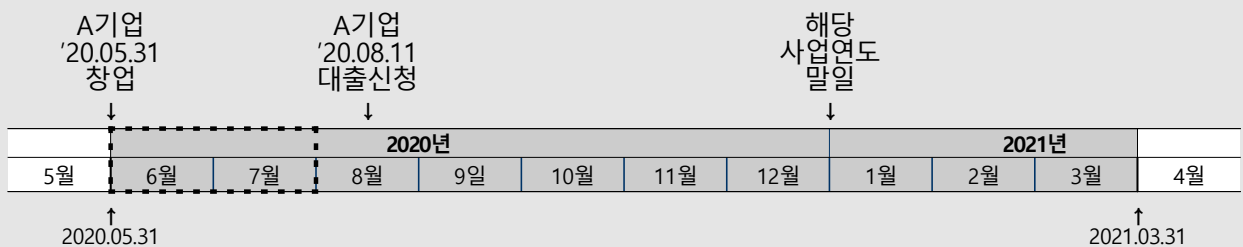


☞ A기업 2020년 10월 01일 대출신청 → 2019년 07월 01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계산한 평균매출액등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0년 04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 A기업 2020년 03월 01일 대출신청 → A기업 창업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 환산한 평균매출액등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대출신청일이 직전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창업일부터 창업한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 ③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경우



☞ A기업 2020년 08월 11일 대출신청 → A기업은 같은 해 2020년 05월 31일에 창업 → A기업의 2020년 6월~7월 매출액을 환산한 평균매출액등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0년 05월 3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 ③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②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 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참고사항>**

<p align="center"><b>근로자</b></p>	<p>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p>
<p align="center"><b>임원</b></p>	<p>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이외의 기업은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개인사업자는 사장)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자 중 무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p>
<p align="center"><b>일용 근로자</b></p>	<p>「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p>
<p align="center"><b>3개월 이내의 근로자</b></p>	<p>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임</p>
<p align="center"><b>연구 전담 요원</b></p>	<p>기업 내 조직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로하더라도 연구전담요원 외의 일반사무직은 상시근로자에 포함</p>
<p align="center"><b>단시간 근로자</b></p>	<p>-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1명을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함 ※ 고령화 시대 및 다양한 일자리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1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이 제외되었음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p>



㉓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8. 11. 20	'20. 3. 25	(직전 사업연도) '19년 1월~'19년 12월
예시2	'19. 2. 5		(최근 12개월) '19년 3월~'20년 2월

#### ④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 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 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p>■ <b>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b>,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p> <p>■ <b>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b>,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 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17년 11월 2일, 대출신청일: '19년 1월 제출기간: '18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18년 5월부터 1명 고용</p> <p>(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p>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④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①~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①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③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④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⑤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4

## 기타 주의사항

-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대상 미확인(신청자격, 참여제한 미숙지 등) 및 연락불능(연락처 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미선정, 선정취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사업화 선정통보 후, 주관기관이 정한 자부담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미제출한 경우, 사업취소로 간주하며 차순위 지원대상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 사업비(국비 및 자부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운영지침 및 편람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선정대상자는 협약 기간 내에 사업화를 완료\*해야 하며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수행이나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는 불인정되며,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사업화 완료 기준

(경영개선사업화) 사업화 계획이행 및 협약기간 종료시점까지 영업유지

- 협약기간 내 폐업, 협약만료 후 1년 이내 폐업의 경우 또는 기타 부정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 교부 및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수 등의 제재조치 및 민·형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 5

## 지역별 주관기관 세부 안내사항

### □ 서울

주관기관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문의처	02-569-8122~3
모집규모	경영진단(306건)	경영개선교육(104건)	경영개선사업화(104건)
○ 지원프로그램			
구분	지원 프로그램	비고	
경영진단	• 경영진단 전문가의 사업장 방문 및 개선솔루션 도출	•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지원	
경영개선 교육 (30H)	• 온라인 기본교육(23H): 업종·아이템별 맞춤형 커리큘럼 제공 및 e나라도움 교육 • 심화교육(7H): 동종업계 성공 소상공인 사업장 체험 등 업종별 특화 실습 현장 프로그램	• 기본교육은 소상공인 배움터 통한 학습 • 심화교육은 업종별 소그룹 대면교육으로 실전 스킬 배양	
사업화 지원	성공멘토링 및 컨설팅	• 경영멘토링: 피보팅 이행전략 수립 및 모니터링, 총 3회 • 회계멘토링: e나라도움 사업비 집행 지원, 총 3회 • 추가 컨설팅 지원: 디지털활용, 사업진행 및 완료점검 총 4회	
	자금지원	• 최대 2,000만원 지원 • e나라도움 사용 및 증빙자료 준비 지원	
	자율프로그램	• 희망리턴 챌린지(1Day 워크샵) • 디지털 활용 장려비용 및 초기세팅 지원 •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 및 힐링 프로그램 • 상세페이지 제작, 사진촬영, 입점비 등 지원 • 영상제작 또는 온라인 광고비 지원	
○ 유의사항			
- 정부지원금 2,0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금 중 현금부담에 해당하는 600만원(정부 지원금의 30%상당)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며 사업기간(~24년 11월 15일)동안 정부지원금과 함께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음			
- 공고문 상의 「참여제한 대상」 및 「신청자격」 확인 후 제출서류를 모두 갖추어 신청접수 요망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희망리턴패키지 전용 홈페이지 <a href="http://www.hopereturn.com">www.hopereturn.com</a>			

### □ 서울

주관기관	나이스평가정보(주)	문의처	1577-1852
모집규모	경영진단(305건)	경영개선교육(104건)	경영개선사업화(104건)
○ 지원프로그램 ※ 자격요건 해당 시 신청자 전원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40% 할인권 제공			
1. 경영개선교육 (기초교육 23시간 내외, 심화교육 7시간 내외)			
① 기초교육: 지식배움터 커리큘럼 기준 경영진단 결과 반영하여 교육 설계 지원			
② 심화교육: 현장실습 비율 80% 이상 커리큘럼 구성			
- 마케팅 홍보 (23년도 만족도 우수 과정)			
· 유튜브 수익창출 전략과정			
· 라이브커머스 판매 전략 과정			
- 수출연계 역량강화 등			
· 물류, 통관, 관세			
· 아마존 입점(아마존코리아 직접 교육)			
2. 경영개선사업화			
① 경영개선 사업화 자금 지원: 최대 2,000만원 지원			
② 경영개선 멘토링: 개인별 1:1 경영멘토링 3회 내외, 회계멘토링 3회 내외 실시			
③ 소비자평가 실시: 소비자 대상 제품 가능 제품 또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 지역별, 성별, 연령별, 소비특성별 소비자평가단 활용, 소비자평가 실시			
-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시 공급원가 지원(100만원 내외)			
- 평가 결과 마케팅 자료 활용 가능 및 평가단 고객 전환 효과			
④ 사업교류회, 힐링캠프, 성과공유회 등 참여 소상공인 네트워킹 지원			
○ 유의사항			
-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 제출 불가합니다.			
- 신청 서류는 모두 필수 제출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대상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미선정, 선정 취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 서울

주관기관	한국표준협회	문의처	1533-5731
모집규모	경영진단(306건)	경영개선교육(104건)	경영개선사업화(104건)

○ 지원프로그램

<p><b>경영진단</b></p> <p>■ (경영진단)</p> <p>① 사업화지원대상자 기본진단</p> <p>② 진단전문가 현장 방문 경영진단</p> <p>③ 취약분야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p>	<p>»</p>	<p><b>경영개선 교육</b></p> <p>■ (경영개선 교육) 온라인 기본교육(23h) + 오프라인 심화교육(7h) 업종전문교육 등 실시</p> <hr/> <p><b>경영개선 사업화</b></p> <p>■ (개선전략 수립) 부실 원인 분석, 업종전환 모색, 점포개선·활성화, 업종전환 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진단, 경영개선 멘토링 진행</p> <p>■ (사업화 자금 지원) 최대 2천만원(평균 1,500만원/자기부담금 50%)</p> <p>■ (마케팅 지원 및 우수성과공유회 등) 권역별 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마케팅홍보 지원 및 우수성과공유회 개최</p> <p>*수요에 따라 프로그램 변경 가능</p>
--	----------	--

○ 유의사항

- 오프라인 교육 시 주차 불가, 대중교통 이용
- 일정과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경기

주관기관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문의처	(031)344-7775
모집규모	경영진단(226건)	경영개선교육(77건)	경영개선사업화(77건)

○ 지원프로그램

- 경영진단+경영교육+멘토링(경영 및 회계)+경영개선 자금을 패키지 지원

구분	지원 프로그램	비고
경영진단	• 경영진단 전문가에 의한 원스톱 현장방문 컨설팅	• 신청기업 대상 선착순 진행
경영개선 교육 (30h)	• 온라인 교육(23h) : 경영전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및 회계, 디지털역량, 사업비집행 교육 등	• 온라인 시스템(소진공 지식배움터)을 통한 교육
	• 오프라인 교육(7h) : 업종 및 아이템별 전문 교육	• 외부 전문 기술교육 기관 교육 선택 가능
멘토링	• 전문 경영멘토 매칭 후 사업화 성과 및 성공률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전략 수립 및 이행 지도	• 3회 내외
	• 사업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지도 및 e나라도움 사업비 집행 업무대행 등 회계전담 멘토링 상시 지원	• 3회 내외
경영개선 자금 지원	• 국고 보조금 최대 2천만원 지원	• 선정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

- 주관기관 자율프로그램 및 추가 프로그램

구분	지원 프로그램	비고
자율프로그램	• 소상공인AMP(최고경영자) 과정	• 소상공인기업을 위한 명사초청 특강 등
	• 경영개선 및 재창업 경진대회	• 경영개선 사례 경진대회 통한 시상
	• 우수사례 벤치마킹	• 우수사례 영상 제작 지원(무상)
추가 프로그램	• 사업계획 작성 교육 및 사업화 교육	• 사업계획 작성요령 설명 및 사업화 안내
	• 사후 컨설팅	• 경영개선 고도화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안내

○ 유의사항

- 지원금액은 최대 금액이므로 선정평가에 의해 차등 지원되며, 자부담 금액을 협약전까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정과 장소는 선정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며 편리한 교육일정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경기

주관기관	에스케이플래닛(주)	문의처	031-620-1240
모집규모	경영진단(454건)	경영개선교육(155건)	경영개선사업화(155건)
○ 지원프로그램			
지원 과정	지원 내용		
■ 경영진단	● 현장방문 & 경영진단		
■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	● 업종별 진단 매뉴얼을 활용한 경영진단		
■ 전문멘토의 경영 및 회계 멘토링	● 최대 2천만원, 평균 15백만원 (국비:자부담 1:1매칭)		
■ 전문가 교육 및 특화자율 프로그램 운용, 성과공유	● 개인별 1:1맞춤형 경영개선 및 회계 멘토링 지원		
■ 전담매니저의 1:1사업화 지원	● 전문가 교육 튜터를 통한 진단, 심사결과를 반영 교육구성·교육 진행		
	● 선정자별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교육 진행		
	● 특화 자율프로그램을 통한 업계 트렌드 및 지역 소상공인의 성공사례 공유		
	● e나라도움 가입부터, 협약, 사업비 교부, 최종 사업비 정산까지 전담 매니저가 사업화 전담지원		
○ 유의사항			
-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 제출 불가하며, 모집규모 충족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대상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미선정, 선정 취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기

주관기관	오렌지나무시스템(주)	문의처	1577-2910
모집규모	경영진단(452건)	경영개선교육(154건)	경영개선사업화(154건)
○ 지원프로그램			
프로그램	지원 내용	세부 내용	
경영개선 교육	기본교육 + 심화교육 (총 30시간 이상)	경영전략, 마케팅, 고객관리 등	
멘토링	경영멘토링 + 회계멘토링(e나라도움)	경영전략 수립 및 사업 진행 지원	
사업화 지원	최대 2천만원 지원	매장 모델링, 마케팅, 온라인 판로 등	
네트워킹 데이	소상공인 네트워킹	경영개선 성공사례, 노하우 발표 등	
자율 프로그램	역량강화 워크숍	우수사례 체험, 경영 전략 공유 등	
	컨설팅 데이	1:1 개별 컨설팅, 애로사항 해소	
	온라인 판로개척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성과공유회	우수사례 성과 공유, 시상	
* 소상공인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경영진단과 서류, 면접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			
- 사업은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 1:1 비율로 진행되며 사업기간(~2024.11.15.) 동안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 가능			
- 문의) 1577-2910 오렌지나무시스템 (경기도 과천시 뒷골로 22-21 3층)			
- 홈페이지) <a href="http://orangenamu.kr">http://orangenamu.kr</a>			



□ 인천

주관기관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문의처	(032)229-7776
모집규모	경영진단(230건)	경영개선교육(79건)	경영개선사업화(79건)

○ 지원프로그램

- 경영진단+경영교육+멘토링(경영 및 회계)+경영개선 자금을 패키지 지원

구분	지원 프로그램	비고
경영진단	• 경영진단 전문가에 의한 원스탑 현장방문 컨설팅	• 신청기업 대상 선착순 진행
경영개선 교육 (30h)	기본 • 온라인 교육(23h) : 경영전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및 회계, 디지털역량, 사업비집행 교육 등	• 온라인 시스템소진공 지식배움터를 통한 교육
	심화 • 오프라인 교육(7h) : 업종 및 아이템별 전문 교육	• 외부 전문 기술교육 기관 교육 선택 가능
멘토링	경영 • 전문 경영멘토 매칭 후 사업화 성과 및 성공률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전략 수립 및 이행 지도	• 3회 내외
	회계 • 사업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지도 및 e나라도움 사업비 집행 업무대행 등 회계전담 멘토링 상시 지원	• 3회 내외
경영개선 자금 지원	• 국고 보조금 최대 2천만원 지원	• 선정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

- 주관기관 자율프로그램 및 추가 프로그램

구분	지원 프로그램	비고
자율프로그램	• 소상공인AMP(최고경영자) 과정	• 소상공인기업을 위한 명사초청 특강 등
	• 경영개선 및 재창업 경진대회	• 경영개선 사례 경진대회 통한 시상
	• 우수사례 벤치마킹	• 우수사례 영상 제작 지원(무상)
추가 프로그램	• 사업계획 작성 교육 및 사업화 교육	• 사업계획 작성요령 설명 및 사업화 안내
	• 사후 컨설팅	• 경영개선 고도화,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안내

○ 유의사항

- 지원금액은 최대 금액이므로 선정평가에 의해 차등 지원되며, 자부담 금액을 협약전까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정과 장소는 선정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며 편리한 교육일정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강원

주관기관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문의처	033-256-3520
모집규모	경영진단(135건)	경영개선교육(46건)	경영개선사업화(46건)

○ 지원프로그램

구분	지원 내용
경영진단	경영진단 전문가에 의한 원스탑 현장 방문 컨설팅
경영개선 교육	기본교육 (23시간)
	심화교육 (7시간)
경영개선 사업화지원	경영멘토의 피보팅전략 진단 및 지도
	회계멘토의 사업화집행 진단 및 지도
	소상공인 성공사례지원 및 성과공유회
	자율프로그램(힐링프로그램 및 네트워킹데이)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 국비지원 (국비, 총사업비의 50%)

\* 경영개선 사업화 총 사업비의 구성(예시)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4,000만원 (100%)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이하)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	현물
		600만원 (총사업비의 15%이상)	1,400만원 (총사업비의 35%이하)

○ 유의사항

-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금 중 현금부담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며 사업기간 (~2024년 11월 15일)동안 정부지원금과 함께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음
- 신청 방법은 주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화 지원대상자 선발을 위한 발표평가는 신청자의 분포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선정함.
- 교육장 및 발표 평가장 이용시 대중교통 권장
- 한국경영기술 지도사회 홈페이지 [www.kmtca.or.kr](http://www.kmtca.or.kr)

□ 대전

주관기관	한국표준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문의처	1533-5731
모집규모	경영진단(137건)	경영개선교육(47건)	경영개선사업화(47건)

○ 지원프로그램

<p><b>경영진단</b></p> <p>■ (경영진단)</p> <p>① 사업화지원대상자 기본진단</p> <p>② 진단전문가 현장 방문 경영진단</p> <p>③ 취약분야 개선교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p>	»	<p><b>경영개선 교육</b></p> <p>■ (경영개선 교육) 온라인 기본교육(23h) + 오프라인 심화교육(7h) 업종전문교육 등 실시</p> <p><b>경영개선 사업화</b></p> <p>■ (개선전략 수립) 부실 원인 분석, 업종전환 모색, 점포개선·활성화, 업종전환 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진단, 경영개선 멘토링 진행</p> <p>■ (사업화 자금 지원) 최대 2천만원(평균 1,500만원/자기부담금 50%)</p> <p>■ (마케팅 지원 및 우수성과공유회 등) 권역별 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마케팅홍보 지원 및 우수성과공유회 개최</p> <p>*수요에 따라 프로그램 변경 가능</p>
--	---	--

○ 유의사항

- 오프라인 교육 시 주차 불가, 대중교통 이용
- 일정과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충북

주관기관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문의처	043-230-9762~5
모집규모	경영진단(131건)	경영개선교육(44건)	경영개선사업화(44건)

○ 지원프로그램

온라인  
신청

→

경영  
진단

→

사업계획  
작성 교육

→

선정평가

→

경영개선  
교육

→

사업화지원  
멘토링  
추가컨설팅 등

- 경영진단: 업종별 현장 경영진단을 통한 취약과제 발굴 및 솔루션제공

- 경영개선교육: 온·오프라인교육(온라인 23h + 1박2일 집체교육)

- 사업화지원 : 사업화자금 최대 2천만원, 멘토링 6회 등

- 기타 : 추가컨설팅 2회, 경영자문상담회, 성과공유회 등 참여 기회 부여

○ 유의사항

- 상기 지원내용은 사업진행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 허위사실 기재는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충남**

<b>주관기관</b>	<b>(재)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b>	<b>문의처</b>	<b>041-424-4000(보부상콜센터)</b>
<b>모집규모</b>	경영진단(179건)	경영개선교육(61건)	경영개선사업화(61건)

○ 지원프로그램(안)

- 온라인 판로지원 : 온라인 마케팅 홍보 지원(플레이스 등록 및 갱신 등), 맞춤형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등
- 오프라인 판로지원 : 제품 전시 및 판매, 홍보 등 지원
- IP지원 :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지원(우선심사, 출원, 등록 등)
- 글로벌화 지원 :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해외 판로 개척 준비 지원(화상상담 및 FTA 활용 특강 등)
- 스마트 선도산업 탐방 : 제조업 소상공인 대상 로봇 및 디지털 자동화 활용 산업 탐방 및 특강

○ 경영개선교육(안)

- 기본교육: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창업, 경영, 마케팅, 판로개척 등)
- 심화교육: 마케팅 교육(스마트 플레이스 상위 노출방법 등)

○ 유의사항(중복지원 불가)

- 충남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유사분야(충남도 협의 후 조정 예정)
- 충남도 소상공인 희망 재기사업 수혜업체(23~24년)
- 기타 중복지원 사업은 소진공 및 충남도 협의 후 조정 예정

□ **광주 · 전남 · 제주**

<b>주관기관</b>	<b>(주)세종경영연구소</b>	<b>문의처</b>	<b>062-573-0850, 053-716-0851 070-4322-6425~6, 6428</b>
<b>모집규모</b>	경영진단(348건)	경영개선교육(119건)	경영개선사업화(119건)

○ 지원프로그램(교육 및 컨설팅, 자유프로그램 등)

프로그램명	내용
경영개선 교육	대면, 비대면 병행 총 30시간 (기초교육 23시간 / 심화교육 7시간)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	멘토링 + 경영개선 사업화자금지원 (최대 2천만원)
성과공유회	성공사례 공유 및 네트워킹

○ 유의사항

- 지원대상 공고문 상의 「참여제한 대상」 확인 후 신청 접수 필수
- 신청자격 확인 후 서류 일체 제출 (미첨부 시 신청 불가)
- 권역내 모집인원 초과시점 이후에서는 접수불가 될 수 있음(권역내 경영진단 배정물량 기준 선착순 접수)
- 선정 후 기한 내 자부담금 미납부 시 신청 취소
- 허위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 이상 발견 시 선정 취소
- 선정 시 타 정부사업 중복 확인서 징구

□ 전북

주관기관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문의처	063-717-1303,1305,1310,1312
모집규모	경영진단(157건)	경영개선교육(54건)	경영개선사업화(54건)
○ 지원프로그램(교육 및 컨설팅, 자율프로그램 등)			
구분	사업내용		비고
경영진단	○ 경영위기 사업장 방문 및 경영진단 - 개선솔루션 도출 및 결과 제공		
교육	○ 실무 활용 가능한 경영개선 교육 - 공통 기본교육 + 업종별 특화교육 + 사업화교육 - 사업화 확장을 위한 심화 교육(체험, 강의 등) 및 멘토링 운영		소상공인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경영/실습)
사업화	○ 사업화자금 지원 - 경영멘토, 회계멘토 매칭을 통한 경영개선전략 수립 및 이행지도 - 인증·평가, 매장모델링, 브랜드개발, 제품개선, 마케팅, 온라인판로 등		업체당 최대 20백만원
(공통) 자율 프로그램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리테일 박람회 견학지원 - 비대면·온라인화 등 경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박람회 견학 지원 ○ 졸업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아이템 믹싱데이 개최 - 선배창업자 및 유관기관 간 정보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커뮤니티 구성 ○ 우수소상공인 선진사례 탐방 - 경영위기 극복사례, 재창업 과정 등 특강과 함께 선진지 벤치마킹 ○ 성과공유회 개최 - 소상공인 간 성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아이템 도출 기회 제공		수요에 따라 프로그램 변경 가능
○ 유의사항			
- 제출요령 미준수 및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신청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허위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탈락처리 되며, 선정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음			

□ 대구 · 경북

주관기관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문의처	1833-7113
모집규모	경영진단 (412건)	경영개선교육 (140건)	경영개선사업화 (140건)
○ 지원프로그램			
<b>경영개선 교육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b>			
경영진단	- 분야별 경영진단 전문가를 통한 사업장 경영진단		
경영개선 교육(30h)	- 튜터 상담을 통한 개별 맞춤형 필요 커리큘럼 추천 - 온라인 교육(23h), 대면을 통한 실습 중심 맞춤형 심화 교육(7h 이상)		
경영개선 사업화	- 경영멘토 매칭을 통한 사업화 계획 및 이행 지원 - 회계멘토 매칭을 통한 e나라도움 사업비 집행 지원 - 상담을 통한 국고보조금 매칭(최대 20백만원)		
사업화 지원 특화 프로그램	업종별 맞춤 교육	선배 기업 경영 체험	힐링 워크숍
	네트워크 데이 우수 사례 업체 마케팅, 디자인 제작 등 추가 지원		
○ 유의사항			
- 선정 후 경영개선 교육(30h) 이수 필수			
- 모집공고 신청 기한 내 반드시 신청 완료하여야 함			

□ **경남**

<b>주관기관</b>	<b>경남신용보증재단</b>	<b>문의처</b>	<b>055-715-5149, 5126</b>
<b>모집규모</b>	경영진단(268건)	경영개선교육(91건)	경영개선사업화(91건)

○ 지원프로그램

<b>교육</b>	기본 온라인교육 (23h) + 실무 대면교육 (7h)
	경영전략, 마케팅전략, 상권분석, 온라인플랫폼 활용법 등 업종별 이론·실무교육 제공
<b>사업화지원</b>	사업화지원금 최대 2천만원 이내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성공 멘토링: 경영개선전략 수립 및 이행지도(3회) + 사업비 집행지도(3회) , 최대 6회 이내
<b>특화프로그램</b>	홍보용 제품(서비스)사진(동영상)촬영지원 : 홍보 및 마케팅 활용 가능
	1:1 맞춤 컨설팅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 명사초청특강
	워케이션(work+vacation):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 기회 및 참여 대상자 간 네트워킹 기회 제공
	성과 공유회 개최 : 사업 참여자 중 우수사례 선정하여 시상식 개최 (상장 및 포상 증정)

○ 유의사항

- 제출 요령 미준수 및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부산**

<b>주관기관</b>	<b>부산신용보증재단</b>	<b>문의처</b>	<b>051-860-6727</b>
<b>모집규모</b>	경영진단(275건)	경영개선교육(94건)	경영개선사업화(94건)

○ 지원프로그램

진단신청

경영진단

선정평가

지원사업 연계

온라인  
신청

현장방문 및  
경영진단

경영개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선정평가  
(서면, 발표)

경영개선 교육  
(기본+심화)

+

경영개선 사업화  
(멘토링+자금)

⇒⇒ 지원사업

구분	지원 프로그램	
경영개선 교육(30h)	기본교육(23h)	· 지식배움터(소진공)를 통한 온라인 교육 (진단결과에 기반한 필수 교과 편성 및 국고보조금법 e나라도움교육은 필수로 진행)
	심화교육(7h)	· 소상공인 개별 요구에 따른 자율 교육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분반형태의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사업화	지원절차	교육수료 확인 및 사업비 교부 → 멘토링 및 개선과제 이행
	성공멘토링	경영멘토링(3회내외) · 사업화 성과 및 성공률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전략 수립 및 이행 지도 회계멘토링(3회내외) · 사업비 집행지도 및 e나라도움 사업비 집행 업무대행
	사업화자금	· 최대 2,000만원 (평균1,500만원) 지원
	자율프로그램	· 성과공유회 및 우수사례 발표
	우수사례 추가지원	· 온라인마케팅, 판촉물제작 등

○ 유의사항

- 공고문 상의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참여제한 대상자와 소상공인여부 확인 후 온라인 신청
- 사업화자금의 총 사업비 50%(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총 사업비의 50%는 자부담. (15% 이상 현금, 35% 이하 현물)
- 자기부담금 중 현물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사후증빙이 가능하나, 증빙자료 미제출 및 지원기준 제외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집행은 불인정.
- 홈페이지 : [www.busansinbo.or.kr](http://www.busansinbo.or.kr) / 메일 : [digital@busansinbo.or.kr](mailto:digital@busansinbo.or.kr)

□ **울산**

<b>주관기관</b>	<b>한국표준협회 울산지역본부</b>	<b>문의처</b>	<b>1533-5731</b>
<b>모집규모</b>	경영진단(79건)	경영개선교육(27건)	경영개선사업화(27건)

○ **지원프로그램**

<p><b>경영진단</b></p> <p>■ (경영진단)</p> <p>① 사업화지원대상자 기본진단</p> <p>② 진단전문가 현장 방문 경영진단</p> <p>③ 취약분야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p>		<p><b>경영개선 교육</b></p> <p>■ (경영개선 교육) 온라인 기본교육(23h) + 오프라인 심화교육(7h) 업종전문교육 등 실시</p> <hr/> <p><b>경영개선 사업화</b></p> <p>■ (개선전략 수립) 부실 원인 분석, 업종전환 모색, 점포개선·활성화, 업종전환 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진단, 경영개선 멘토링 진행</p> <p>■ (사업화 자금 지원) 최대 2천만원(평균 1,500만원/자기부담금 50%)</p> <p>■ (마케팅 지원 및 우수성과공유회 등) 권역별 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마케팅홍보 지원 및 우수성과공유회 개최</p> <p>*수요에 따라 프로그램 변경 가능</p>
--	--	--

○ **유의사항**

- 오프라인 교육 시 주차 불가, 대중교통 이용
- 일정과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